

학과 연구심의위원회(DRB)의 설립 및 운영*

정 경 미[†] 양 유 진 정 상 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최근 국내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의 확립과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연구 윤리의 역사와 연구윤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인 기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간략하게 다룬 후, 외국의 기관심의위원회 사례와 국내 대학의 기관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기관심의위원회의 대안으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과 연구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설립 및 실행과정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연구심의위원회의 운영내용을 크게 연구심의, 학부생참가프로그램, 연구자 및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참가자에 의한 연구평가, 웹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추후 진행방향과 개선점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과 연구심의위원회의 시사점과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연구 윤리, 기관심의위원회, 학과 연구심의위원회, 윤리규정, 시행세칙

* 이 논문은 2단계 BK21 사업(사업단명: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 양성 및 실용화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연세대학교 학과연구심의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주신 한독미디어대학원 대학교 이주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신저자: 정경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fax: 02-365-4354, E-mail: kmchung@yonsei.ac.kr

인간 실험 참가자(human subject)란 연구자가 “살아있는 개인에게 개인과의 상호작용이나 개입을 통해 데이터를 얻거나,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얻을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개인/개체”를 가리킨다(Office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2005).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human research)는 심리학뿐 아니라 의학, 생명공학, 교육학 및 사회학 등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에서 제도화까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온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해 몇 차례에 걸친 수정·보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심리학의 경우,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는 연구윤리규정(<http://www.apa.org/ethics/>)을 통해 실험 참가자 모집 절차에서의 정당성, 사생활에 대한 보호, 자율성뿐만 아니라 연구 진행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제정해 놓고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2, 2002; Christakis, 1988; Williams, 1984). 이에 비해 국내 연구 윤리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상의 발전은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2005년 황우석 사건에서 2008년 카이스트 김태국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에 이르기까지 윤리규범에 어긋나게 수행된 연구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향상되었고, 이 결과로 연구윤리 제도의 확립과 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e.g.,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2007). 또한 크게 증가한 연구자간의 국제교류 역시 서구의 연구기준에 준하는 연구윤리 제도의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 연구 윤리가 제도화 된

역사와 기관심의위원회(Institute Review Board)의 역할과 기능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일찍이 연구 윤리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는 미국 주요 기관/대학의 기관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알아보고, 2) 국내 기관/대학의 기관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요약한 후, 3) 윤리규정에 대한 증폭된 요구와 윤리제도 실행 측면에서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과윤리심의위원회의 규정 및 시행세칙, 그리고 지난 3년간의 활동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볼 것일 것이다. 끝으로 학과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추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연구윤리의 제도화 및 외국 기관/대학의 기관심의위원회

서구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시 학문의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나치에 의해 행해진 잔혹한 의학 실험에 대한 결과로 연구 참여에 대한 윤리적 지침과 절차를 다룬 ‘뉘른베르크 강령’¹⁾(1947)이 선포되었다. 그 이후로 연구 윤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연구 수행과 관련된 윤리적 지침이 확립되어 왔다. 특히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억되는 1972년 터스키기의 실험²⁾은 권고나 지침에 머

1)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채택된 뉘른베르크 강령은 참가자의 자발적 동의와 중도 포기 권리 등을 최초로 명시하였다(<http://ohsr.od.nih.gov/nuremberg.php>)³⁾.

2) 터스키기는 미국 앨라배마 주 터스키기 공중보건의로 매독에 걸린 412명의 흑인을 대상으로 실제로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치료를 해 준다고 속이고, 매독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물렸던 윤리 기준들을 법과 제도적인 장치에 의한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의 보건교육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현 보건복지부)는 1947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한 규제를 연방 규정에 포함시켰고, 이 내용을 담은 국립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생의학 및 행동과학 연구 실험대상자의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Bioethics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국가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윤리의 확립과 이의 시행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1) 현재까지도 인간 실험 참가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벨몬트 보고서(Belmont Report; 1979)³⁾를 발표하였고, 2) 각 기관에 기관심의위원회(Institute Review Board: IRB)를 통한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미국 내 대학을 포함한 각 연구 기관은 연방법에 따라 각 기관 고유의 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연구법의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는 물론이고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에 대해 철저한 심의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대학은 따로 연구관련 부처를 두어 연방법의 규정보다 훨씬 엄격한 연구윤리지침을 수립하고 연구 윤리관련 교육과 행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2000년에는 연방정부 내

에 인간대상연구보호국(OHRP)이라는 기관이 설치되어 연구 윤리의 감독과 관리의 통합을 꾀하는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법제가 점점 더 강력해 지고 있다(외국의 기관/대학의 윤리제도와 역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이 공동으로 2007년 발행한 “외국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활동사례” 참조).

기관심의위원회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자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 윤리적 지침과 함께 연구 계획에서 결과보고에 이르는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제도적 기구이다. 기관심의위원회의 활동에는 연구계획성의 과학성 및 윤리성 심의, 참가 동의서 및 동의과정의 심의, 승인된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각 기관/대학은 연방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관련 제도 마련, 연구 승인, 관리 등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연방정부는 운영의 용이성 때문에 각 기관/대학에 연구 전반에 관한 결정권과 독립권을 주지만 각 기관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관심의위원회를 연방정부의 감독 하에 두어 감찰하고 평가한다. 기관심의위원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hhs.gov/ohrp/>에서 찾을 수 있다.

뇌신경계, 심혈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http://www.cdc.gov/tuskegee/timeline.htm>).

3) 벨몬트 보고서는 인간 존중(respect for persons), 선행(beneficence), 정의(justice)를 기본적인 윤리지침으로 하여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자발적 동의, 연구에 수반되는 이득과 위험의 체계적 평가와 균형있는 실험 참가자 선정을 세부적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http://ohrp.osophs.dhhs.gov/humansubjects/guidnave/belmont.htm>)

4) 기관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연구가 기관단위로 이루어지던 1970년대 배경에서 나온 용어이며, 유럽에서는 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 EC), 캐나다에서는 연구심의위원회(Research Ethics Board; REB)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국내 대학의 기관심의위원회 현황

국내에서도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기관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995년 식약청에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마련하고 한국임상시험관리기준(KGCP)을 제정하여 임상시험기관에 기관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2002년에는 대한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가 발족되었다. 또한 2005년에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명과학기술 부문에 한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어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과 참가자의 동의여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호책 등을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기관심의위원회는 주로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에는 심의해야 하는 연구의 영역이 넓고 각 방법론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 기관심의위원회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김옥주, 2008).

학술진흥재단이 2007년에 국내 4년제 대학 218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활동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 28개(12.8%)의 대학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기관심의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운영 및 감사위원회 등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 이 중 기관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대학은 총 15개였으며, 각각은 00대학(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인체시험심의위원회, 00생명윤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대개 대학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단과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을지의과대학의 단 1건에 불과했다. 2003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3년 동안 위원회가 개최된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3.3%가 0회,

38.1%가 1-5회, 14.3%가 6-10회, 그리고 9.5%가 16회 이상. 이 자료는 각 대학의 윤리위원회 활동이 아직 미비함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을 때, 71.6%가 필요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28.4%(56개 대학)는 설치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학술진흥재단, 200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세부적으로는 기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학 기관 및 연구자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관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생명공학 및 의학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심리학이나 사회학과 같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는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연구 참가자 보호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관심의위원회의 활성화나 영국의 요크대학교(<http://www.research.yorku.ca/publichome/>)와 같이 학과심의위원회 등 다른 심의기관의 설립으로 연구윤리정책과 실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의 학과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립 및 운영

연세대학교의 경우, 총 3개의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진실성위원회, 인체시험심의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그것이다. 이 중 기관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인체시험심의위원회가 본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http://www2.yonsei.ac.kr/rule/rulemain.asp>), 의료원에는 임상실험센터에서 주관하고 신촌과 영동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두 개의 기관심

의위원회(<http://sev.iseverance.com/ctc/>)가 있다. 의료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관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규정이나 지침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심의절차나 일정 등이 계획적이다. 특히 신촌 의료원의 경우 연구영역별로 심의 일정이 6개월 단위로 미리 계획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이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를 받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가 용이하다. 반면 본교의 인체시험심의위원회는 의료원에 비해 운영이 활발하지 않은데, 규정상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해진 심의 일정이 없어 실제로 연구자가 이용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게다가 일정 심사비용이 요구된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와 의과대학의 경우 한 학기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70-100개에 이르는데, 본교 인체시험심의위원회에서 이 많은 심사를 할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수의 연구가 연구비 지원이 없는 대학원생들의 학위 논문에 해당되므로 심사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의료원에서는 학위 논문이나 학생 연구의 경우 비용을 받지 않지만 의료원에 속한 연구만을 심사하므로, 심리학과에서 진행되는 연구의 경우에는 의료원의 기관심의위원회의 승인신청이 허락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리학과에서 행해지는 모든 연구에 본교 혹은 의료원 기관심의위원회에서 연구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심리학과 내에서도 국제연구의 활성화에 따라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 윤리를 따라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점차로 강화되는 연구자 윤리 교육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요구와 필요성에 반한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는 BK 21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4

월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연구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심리학과에서 실시되는 모든 연구를 심의하고 있다. 2006년 5월에는 심리학과 연구 윤리지침 및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같은 해 7월에 공포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에 여러 차례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개정, 공포하였다. 심리학과 규정에 의해 2006년 9월부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연구들은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으며, 6개월에 한번씩(예, 봄 학기와 여름 계절학기, 그리고 가을 학기와 겨울 계절학기) 학과에서 승인된 모든 연구계획서와 승인허락청구서가 본교 인체시험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후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2009년 현재까지 총 4회(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에 걸쳐 인체시험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본 학과에서는 연구 활성화와 참가 학부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1998년도부터 심리학과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들에게 심리학과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하는 학부생 실험 참가자 프로그램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심의위원회는 전통적인 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인 연구 승인 절차에 학부생 실험 참가자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본 학과만의 특징적인 기능과 체계라 할 수 있다.

연구심의위원회의 목적

연구심의위원회는 학과 자체검증시스템을

5) 학부생 실험 참가자 프로그램은 본 논문 7쪽 참고

통한 연구윤리의 평가를 목적으로 심리학과에서 실시되는 모든 연구를 사전에 심의한다. 특히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동의, 임의적인 연구 참여 포기 등의 연구 참가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윤리적이고 안전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연구자와 참가자에게 연구 윤리의 필요성과 윤리 기준 등을 알려 연구윤리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 학기 말 연구 참가자의 연구 평가를 통해 연구개선 및 발전을 꾀하고 연구자와 연구 참가자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 평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해당 연구의 윤리적 안정성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 구성

연구심의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 2인의 운영위원, 운영위원을 포함한 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조직 구성원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서, 연구신청서의 윤리적, 과학적 측면을 검토,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것이 검증된 자로서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임명된다. 모든 조직 구성원은 연 15회 내외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 논의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5인의 심사위원은 연 2회(매 학기 초)의 연구신청서 심사에 참여하며, 이 중 2인의 운영위원은 상시 접수된 연구신청서 심사를 담당한다(부록 1.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 규정' 참고).

연구심의위원회 회의는 연구심사, 학부생 실험 참가자 신청 및 마감과 같은 주요 일정

이 있을 때나 기타 주요 안건이 있을 때 소집되며,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둔다. 연구심의위원회는 2006년에 총 18회, 2007년에 총 18회, 2008년에 총 11회, 2009년 1학기에는 총 5회의 회의를 가졌으며, 주로 연구심사, 연구자별 학부생 실험 참가자 신청, 시스템 정비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다.

세부 활동 및 실적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의 세부 활동에 대한 내용 및 절차는 위원회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부록 1.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 규정' 및 부록 2.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 시행세칙' 참고).

연구심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교내 연구뿐만 아니라 교외연구도 포함하여 심리학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심리학 연구에 대해 연구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부터는 학과 내규에 입각하여, 학위논문은 반드시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연구의 경우 학위수여를 불허하고 있다. 만약 심의 대상인 연구가 의료적, 의학적, 대인적 측면을 포함한 의료원과 공동연구 시, 의료원의 기관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게 되며, 의료원의 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연구심의는 정기 심사와 상시 심사로 구분되며, 정기 심사는 연 2회 매 학기 개강 전에 이루어지고 상시 심사는 교외 연구에 한해 연구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접수된 연구신청서는 심사 위원에게 전달되는데, 연구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자신이 속한 연구실의 연구신청서의 심사에서 배제된다. 연구신청서는 심의를 거쳐 ‘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사’, ‘불허’의 네 가지 판정 가운데 하나를 받게 된다.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연구의 경우, 일주일 내에 수정한 연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연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09년 1학기에 접수된 연구신청서 114건 중 1차 심사에서 ‘승인’된 연구는 총 43건(약 38%)이었으며, ‘수정 후 승인’을 받은 연구는 39건(약 34%)이었다. 32건(28%)이 ‘수정 후 재심사’를 받아 2차 혹은 3차 심사를 받았으며, ‘불허’ 결정을 받은 연구는 없었다. 2008년 1, 2학기 와 비교할 때, 1차 심사에서 ‘승인’된 전체 29, 25%에서 38%로 증가한 반면, ‘재심사’를 받은 연구는 전체 60, 45%에서 28%로 크게 줄어, 해가 갈수록 연구자들 사이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고).

2006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정기 심사기간에 제출된 연구신청서의 수는 평균 약 89건으로 학기별 자세한 수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상시 심사는 매 학기 약 10건

표 1. 정기 연구심사 결과(건 수/%)

	승인	수정 후 승인	재심사	불승인	합계
2008년 1학기	21건 (29)	8건 (11)	41건 (60)	0건 (0)	72건 (100)
2008년 2학기	21건 (25)	26건 (31)	38건 (45)	0건 (0)	85건 (100)
2009년 1학기	43건 (38)	39건 (34)	32건 (28)	0건 (0)	114건 (100)

표 2. 정기 심사 연구 신청서 수

	정기 심사 연구 신청서 수
2006년 2학기	93건
2007년 1학기	86건
2007년 2학기	84건
2008년 1학기	72건
2008년 2학기	85건
2009년 1학기	114건
평균	약 89건

내외이며 2009년 1학기에는 12건이 상시 심사를 통해 연구 승인을 받았다. 또한 심사를 통해 연구가 승인된 후에 연구 설계나 도구의 변경 등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최소 연구 시작 일주일 전에 위원회에 연구 변경서를 제출하여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심의 기준은 크게 연구 자체의 가치 평가와 참가자 보호로 구분되며, 연구심회에 필요한 연구신청서와 참가동의서, 사후설명서에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부록 3. ‘연구신청서’, 부록 4. ‘연구 동의서’ 양식 참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자체의 가치 평가에서는 연구의 심리학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연구 가설이 철저한 기존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실험설계나 도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이 적절한가를 평가한다.

참가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위험요소, 정보 보호, 적절한 동의 절차와 사후 설명 등을 평가한다. 연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면밀히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 물리적 손상이나 고통, 음식이나 비타민 등의 투여 등을 비롯한 물리적 위험요소, 심리적 손상이나

스트레스, 죄책감등의 부정적 심리를 포함한 심리적 위험 요소, 사회적 지위 저하나 개인 사생활 침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요소, 연구제 목이나 지시, 정보로 인한 속임 등이 발생할 것인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함께 평가한다.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연구동의서와 사후설명서가 참가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였는지, 실험 도중 임의로 참가를 철회하는 등의 참가자 권리가 제대로 명시되어있는지를 본다.

학부생 실험 참가 프로그램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되는 연구는 실시장소와 대상을 기준으로 교내연구와 교외 연구 혹은 크레딧 사용 연구와 미크레딧 연구로 구분된다. 크레딧이란 일종의 연구단위로써 1 크레딧은 30분 이내의 단일 연구를 뜻한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2008년 1학기 기준, 한 과목당 2 크레딧, 한 학기 최대 4 크레딧을 이수해야 하며, 실험참가여부는 성적에 5% 반영되게 된다. 만약 실험 참가를 원하지 않거나, 참가가 여의치 않은 학생들은 기타 보고서 등의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 참가 거부에 대한 권리 및 대체 수단에 대한 준비는 심리학과 연구 심의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다.

연구심의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연구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에게 크레딧을 배분하는 일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연구 목적, 내용, 절차, 직전 학기의 해당 연구자의 크레딧 사용 내역과 해당 연구가 학위논문을 위한 것인

지, 내/외부로부터 연구비 수혜를 받아 진행 중인지 등의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각 연구에 크레딧을 배분한다. 크레딧은 심리학과에서 개설되는 수업의 수강인원이 확정된 이후에 부여된다.

교육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 4회의 정기적인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에는 연구 윤리의 필요성, 연구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역할, 연구심의위원회 윤리지침들이 포함되며, 지난 학기 심의를 통과한 연구의 수, 크레딧 사용 현황 등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또한 연구 참가자가 제출한 연구 피드백을 바탕으로 연구 수행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논의하며, 우수 연구자 및 불성실 연구자를 발표한다.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연구자는 교육 내용이 담긴 DVD를 보거나 연구윤리 관련 문헌을 읽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 참가자들은 <심리학 실험 참가 안내문>을 통해 연구 윤리와 참가자 권리에 대한 간접적인 교육을 받는다. <심리학 실험 참가 안내문>은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에게 제공되며, 연구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 참가자 권리와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가자의 권리에는 참가 철회의 권리, 익명 및 비밀 보장의 권리, 자신의 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류 요청의 권리와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연구심의위원회 등에 알릴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참가자에 의한 연구평가

연구심의위원회는 각 연구가 윤리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연구 참가자의 보

호를 보장하고, 연구의 윤리적, 학문적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 학기 연구 참가자로부터 참가한 연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수업에서는 심리학 연구에 참여한 후 이에 대한 소감을 ‘심리학 연구 참가 보고서’의 형식으로 받고 있는데,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취합하여 전체 혹은 개별 연구진행에 반영하고 있다.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 평가 내용을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 위원회 운영 및 시스템 정비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매 학기 초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교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전달하고 있다. 또한 연구 평가 내용을 개별 연구 및 연구자별로 정리하여 해당 연구자와 지도교수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연구 설계와 진행에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6년 2학기부터 2008년 1학기까지 4학기 동안 총 789명의 참가자에게 받은 연구평가 내용을 동의절차, 연구실환경, 연구자태도, 연구내용, 사후설명, 기타의견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동의절차에는 연구내용 소개와 참가자의 권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알려 주었는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연구실 환경에는 연구 장소의 적절성을 주로 평가하며, 익명성이 보장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었는지, 적극적인 연구 참여를 저해할 만한 환경적 요소가 있었는가를 검토한다. 연구자태도에서는 연구자가 참가자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였는지, 연구준비를 철저히 하였는지, 혹은 요구특성이 발생할 만한 언급을 하지는 않

표 3. 연구 평가 결과 (단위: %)

		2006년 2학기	2007년 1학기	2007년 2학기	2008년 1학기
동의절차	긍정	13	8	6	11
	부정	3	6	1	1
연구실환경	긍정	1	1	1	1
	부정	8	14	7	7
연구자태도	긍정	4	13	12	17
	부정	10	8	2	4
연구내용	긍정	-	-	-	-
	부정	7	8	6	7
사후설명	긍정	11	12	5	14
	부정	19	6	6	7
기타	긍정	-	-	-	-
	부정	4	5	5	6
학생 수(수업 수)		72명(1개)	94명(3개)	203명(4개)	420명(9개)
피드백 수(연구 수)		134개(32개)	156개(59개)	422개(62개)	1,064개(57개)

있는지를 평가한다. 연구내용은 연구 내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것으로 연구 내용이 신체적 위해나 정서적 불편감, 그리고 속임 여부를 다루고, 사후설명에서는 사후설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다룬다. 마지막 기타 의견에는 위 5가지 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윤리 및 심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분석 내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평가를 한 학부생 수는 2006년 2학기에는 1개 수업 72명에서 2008년 1학기에는 총 9개 수업 420명으로 늘었다. 평가 받은 연구 수도 증가하여 2006년 2학기에는 총 32개 연구에 대해 134개의 평가가 이루어진 반면, 2008년 1학기에는 57개 실험에 1,064개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각 항목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추이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사후설명과 동의절차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07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8년 상반기에 들어 다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연구자 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06년 2학기에 4%였던 것이 2008년 학기에는 17%로 증가하여 눈에 띄는 향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 내용과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자료부족으로 긍정적 평가를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부정적 평가의 추이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부정적 평가의 감소는 긍정적 평가의 증가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동의절차와 연구자 태도, 사후설명은 각각 2006년 2학기에 3%와 10%, 19%였던 것이 2008년 1학기에는 1%, 4%와 7%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연구실험결과와 기타의견은 학기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부정적 평가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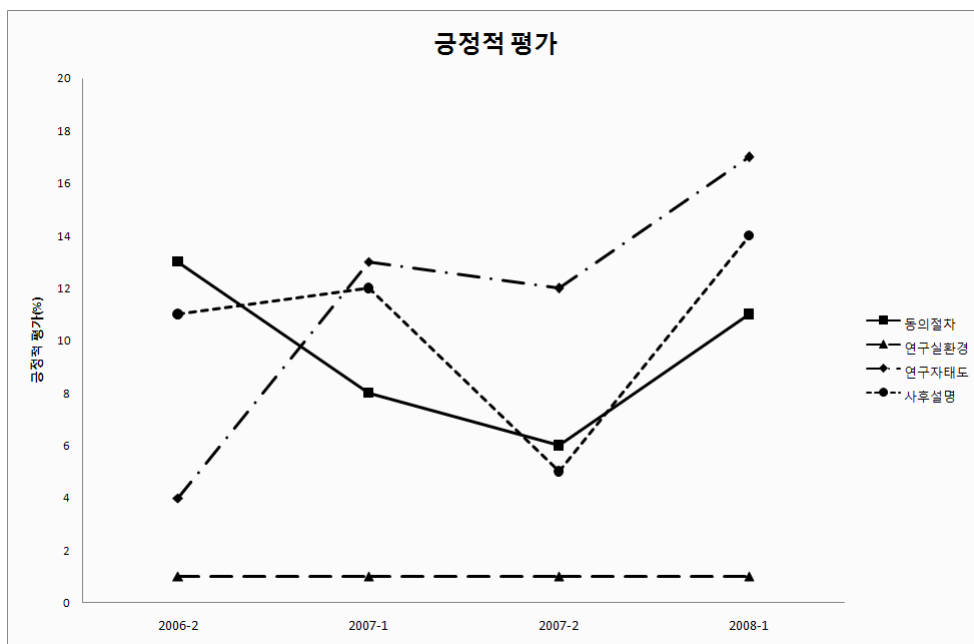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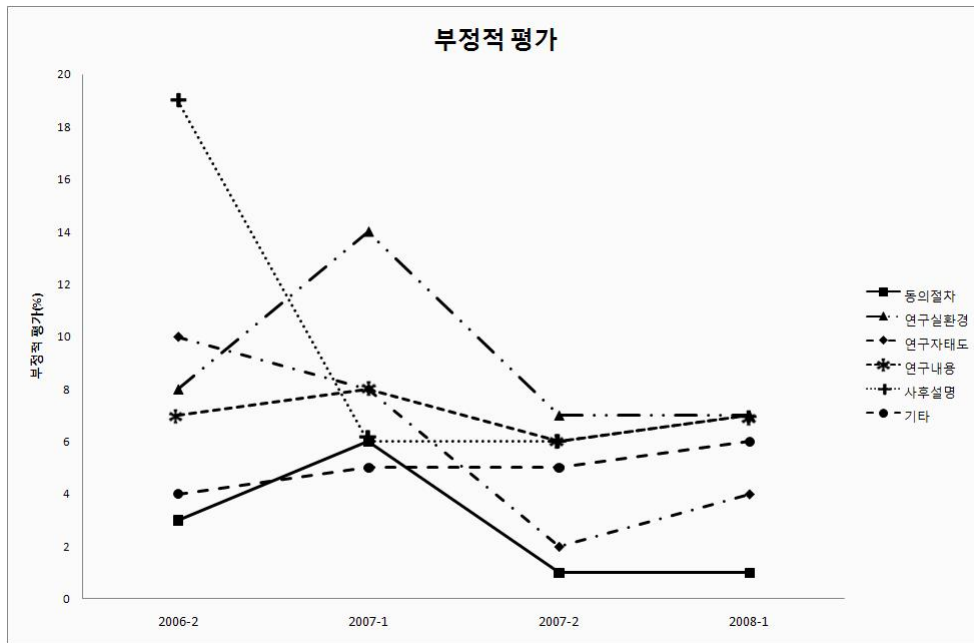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에 대한 부정적 평가 추이

타 의견에는 연구의 목적과 가설에 대한 사후 설명 외에 자신의 연구결과나 최종 연구결과를 알 수 없어 아쉬웠고, 연구 시간이 예정된 것보다 오래 걸렸다, 다른 참가자들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아 불편했다는 등의 의견이 포함되었다.

연구평가에 대한 내용을 수치화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8년 1학기부터는 각 영역을 ‘1점=매우 부실’에서 ‘5점=매우 적절’까지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2008년 2학기에는 47개의 연구에 대해 총 3,207개의 피드백이, 2009년 1학기에는 58개의 연구에 대해서 총 3,474개의 피드백이 이루어졌으며, 평가 결과는 표 4에 정리되어있다. 2008년 2학기과 2009년 1학기에 실시된 평가에서 참가자들은 모든 영역에서 평균적으로 ‘적절’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표 4. 연구평가결과(단위: 점)

	2008년 2학기	2009년 1학기
동의절차	4.38	4.42
연구실환경	4.42	4.49
연구자태도	4.47	4.52
연구내용	4.41	4.48
사후설명	4.25	4.26
총점	21.94	22.18
피드백 수	3,207개	3,474개
연구 수	47개	58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년 연구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을 개선하여 새로운 웹 기반 연구 관리 시스템(<http://psysemi.yonsei.ac.kr>)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그림 3 참고). 연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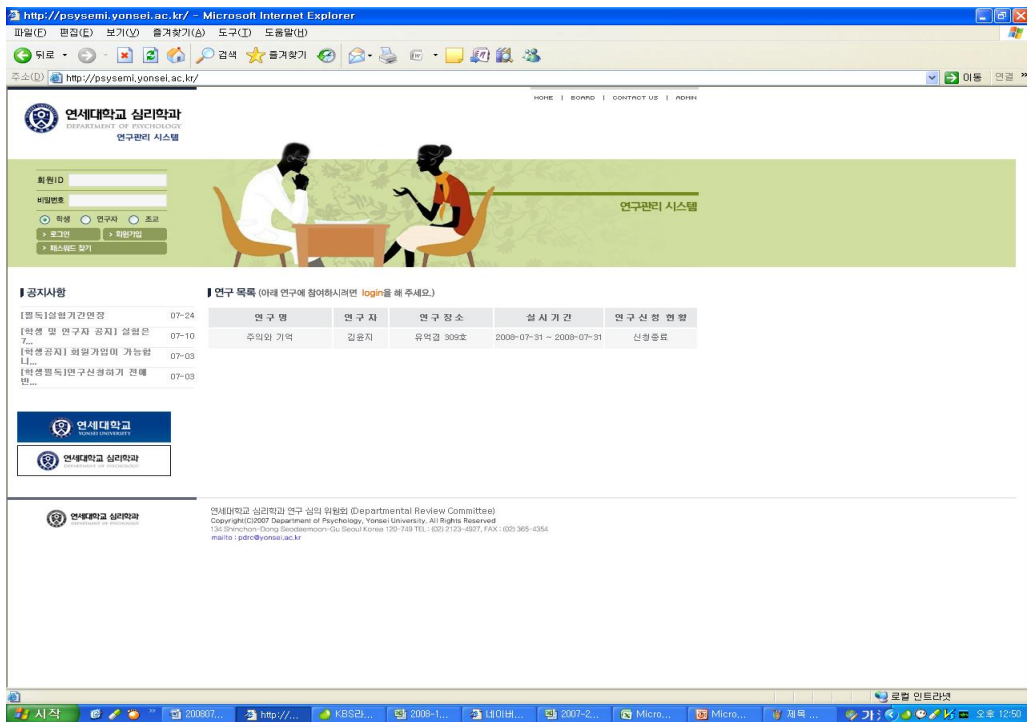


그림 3. Psysemi 접속 화면

시스템에서 연구 등록, 연구 개설, 참가자 모집, 크레딧 부여, 결과보고에 이르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이 처리된다. 크레딧 사용 연구자는 연구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를 등록하고, 연구 설명 및 유의사항, 가능한 실험 시간, 장소, 가능한 인원 등을 입력하여 실험 참가자가 위 사항을 보고 연구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참가자가 연구를 신청하면 참가자의 이메일과 SMS로 신청 내역을 알려주고,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후에는 시스템을 통해 크레딧이 부여된다. 미크레딧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도 연말에 연구결과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 연구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를 개설하고 진행하는지를 확인하고, 게시판이나

메일을 통해 접수된 참가자들의 문의사항과 시스템 및 연구 수행에서의 개선점을 검토, 반영한다.

종합논의/추후연구를 위한 제언

최근 국제연구의 활성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의 증대로 연구윤리의 제도화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하였으나, 심리학 연구 분야에서는 기존 제도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현실적으로 기관심의위원회에 의한 연구승인이 극히 제한된 국내 심리학 연구 환경에 대한 대안책으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06년 2학기에 발족된 학과 연구심의위원

회를 소개하고, 학과 연구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역할, 활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립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 운영을 목적으로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감독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6년 발족된 학과 단위의 기관심의위원회이다. 학과 연구심의위원회는 기관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더하여 심리학과에서 진행되어오던 학부생 실험 참가자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연구윤리와 더불어 실험 참가자 모집절차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제정과 개정의 걸친 현행 규정과 시행세칙과 연구 신청 관련 문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학과 연구심의위원회 발족 후에 축적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은 학과 연구심의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성과를 보여준다. 현재까지 학과 연구심의위원회는 학기당 평균 89건의 논문을 심사, 9회의 회의, 4회의 교육을 수행하였다. 특히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학기마다 점차적으로 확대한 연구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의절차, 연구실 환경, 연구자태도, 연구내용 및 사후 설명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보고는 증가한 반면 부정적인 보고가 감소하였다. 아울러 모든 영역에서 ‘적절’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위원회 활동이 연구자의 태도 향상과 참가자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밖에 학과 연구심의위원회의 발족으로 심리학과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학과 내 및 외부 연구의 활성화와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내 3개의 심리학과 (전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규정과 시행세칙을 포함해 학과 연구심의위원회

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전까지는 기존의 학부생 실험 참가자 프로그램으로 학부생을 이용하는 연구들만 파악이 가능하였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웹기반 연구 관리 시스템을 보다 확장 개발하여 연구 시작에서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 연계하여 감독과 통솔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학과 연구심의 위원회의 출범 후 4년째를 맞는 현재 이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 문제점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연구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현실적인 이유로 모든 심사가 학과 교수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비록 교수 자신이 관련된 연구는 심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연구자와 심사위원 간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편이고, 이러한 특성이 연구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기관심의위원회처럼 연구심의에 윤리적, 과학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으면서 심리학과에서 실시되는 연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외부인사의 영입은 섭외와 비용 및 운영측면에서의 어려움으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우나 우선적으로 일부만 선택해 심사를 의뢰한다든지, 제한된 수의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점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학교 인체심의위원회와의 보다 밀접한 연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는 학과 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학기별로 심사를 마친 다음 학교 인체심의위원회에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과정은 부가적인 행정절차를 요구하며, 아직은

행정상 그리고 재정상의 문제로 이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과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이 보다 인정을 받기 위해선,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와 학교로부터의 승인과정을 통해, 학과승인이 학교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 평가와 관련해서는 학부생을 이용하지 않는 연구(미크레딧 연구) 평가로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실험 참가자로부터 받는 연구평가는 현재 크레딧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를 미크레딧 연구에까지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미크레딧 연구의 참가자를 학교 시스템 안에 포함시키기에 여의치 않아, 연구자를 통해서만 연구 진행 및 결과를 파악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자가 참가자에게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양식을 주고, 이를 취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는 웹기반을 이용한 용이한 윤리교육 절차의 확립이다. 현재는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연구자들을 모아 직접교수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스케줄의 문제로 불참하는 연구자가 많고, 제한된 시간으로 교육내용이 필수정보제공에 제한되고 있다. 이미 Johns Hopkins나 Vanderbilt 등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는 웹기반 교육제도를 마련해서 연구자가 편리한 시간에 교육을 받고 교육 내용에 대한 단답식 시험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되면 교육이수로 간주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대안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에 한국한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웹기반을 이용한 연구자 윤리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제번호 H00004)”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웹기반 제도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내용 결정, 테스트 뱅크 축적, 재정 확보 및 관리 인력 등의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학부생 실험 참가자 프로그램과의 분리에 대해서 재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학부생 실험 참가자 프로그램은 본 심리학과가 학부생들에게는 연구에 대한 개념을 심어 주고 연구자에게는 실험 참가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여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체제이다. 학부생에게 비윤리적으로 무리한 요구가 가지 않도록 학기당 참가해야 하는 연구 수를 줄이고 학과에서 승인을 받지 않는 연구는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교육이나 연구 목적에는 합당하지만 학부생들에게 연구 참여를 의무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제도를 연구심의회에 연결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심리학과에서는 외국이나 타기관의 학부생 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부생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심의위원회 활동 자체에 대한 평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연구를 평가하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다. 즉, 자칫 불필요한 과다개입으로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해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연구를 1인 이상이 심사하여, 보다 유연하고 균형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심의 결과에 대해 연구자와 연구

심의위원회간의 양방향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현 연구심의위원회에서는 재심의제도를 통해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으나, 학과 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에 크게 증대하고 있는 연구 윤리 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국내 현실에 맞도록 학과에 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은 학과 전체의 노력과 성원들의 협조가 대단히 요구되는 큰 작업이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경험은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진행하는데 큰 힘을 준 것이 사실이다. 아직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지만 타 기관/대학의 학과 자체 내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의 일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옥주 (2008, 6월) 국내외 대학 IRB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제 2회 2008 연구윤리포럼 GRP교육과 실천, 연구강국을 향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정, 2008년 개정) 법률 제9100호
 한국한국학술진흥재단 (2006년) 연구윤리소개.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외국 대학의 연구 윤리 확립 활동 사례. 서울
 학술진흥재단 (2007년 2월) 국내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 분석 (정책연구-2006-윤리02),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년 10월). 올바른 연구 실천의 방향과 재단, 제 1회 2007 연구윤리포럼자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2).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American Psychologist*, 47, 1597-161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Washington, DC: Author
 Christakis, N. A (1988). Should IRB monitor research more strickly? *IRB: A Review of Human Subjects Research*, 10, 8-10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1991, Jun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Revised June 23, 2005; <http://www.hhs.gov/ohrp/humansubjects/guidance/45cfr46.htm>
 Willians, P. C. (1984) Success in spite of failure: Why IRBs falter in reviewing risks and benefits. *IRB: A Review of Human Subjects Research*, 10, 1-4
 The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 (1979). *Belmont Report: Ethical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Research*, Washington, D. C.
 Directives for Human Experiment: Nuremberg Code (1949)

1차원고접수 : 2009. 10. 9.
 수정원고접수 : 2010. 2. 11.
 최종게재결정 : 2010. 2. 13.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Departmental Review Board (DRB)

Kyong-Mee Chu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Youjin Yang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Hanyang University Hospital

Sang-Chul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As professional and public attention is drawn to ethical principles of Human Subject Research,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academic associations as well as government have endeavored to set up an Institute Review Board(IRB) to regulate and monitor ethical standards and rules for operation. Despite increased need for IRB, access to IRB has been limited to researchers due to practical reasons. Department of Psychology at Yonsei University established the Departmental Review Board(DRB) as a substitute system to IRB in 2006. This article provided information abou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DRB, as well as its accomplishments made during the past 3 years using objective data. The DRB rules, regulations and forms were attached in the appendix. Future direc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Departmental Review Board, Institutional Review Board, Research ethics*

부록 1.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심의 위원회 규정

제정일: 2006.09.01.

개정일: 2008.01.25.

개정일: 2008.11.24.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과 연구 심의 위원회(Departmental Review Committee, DRC)(이하 “위원회”라 함)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이하 “학과”라 함)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설문, 관찰 등의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헬싱키 선언의 권장에 따라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실시되도록 전문적인 검토, 심의를 하기 위한 학과 연구 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Study)”라 함은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 설문, 관찰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연구를 말한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 참가 시스템(<http://psysemi.yonsei.ac.kr>)의 이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심리학 연구가 학과 심의의 대상이 된다.
2. “참가자(Participant)”라 함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거나 대답하거나 행동을 관찰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자(Investigator)”라 함은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를 말한다.
4. “실험자(Experimenter)”라 함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직접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참가자 관리조교(Participant Pool Coordinator)”라 함은 학과에서 신청, 개설, 수행되는 모든 연구와 참가자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신속심의(Expedite Review)”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정해진 회의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권한과 임무) 이 위원회는 전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1. 위원회는 심리학과 소속의 모든 연구(소속 교원, 대학원 재학생 및 심리학 연구 수행을 희망하는 관련 연구자의 연구)를 심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영향이 윤리적이고 안전하도록 연구목적과 수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검토 대상이 되는 연구의 연구자는 위원회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해당 연구 수행과정이 윤리적이고 안전하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공정한 지위를 유지한다.
4. 연구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수행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는 연구 관련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위원회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총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과 위원은 연구계획의 수립 및 수행에 있어 윤리적, 과학적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원,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과 교수회의에서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학과 교수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소집)

1. 위원회는 학기별 1회 정기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연구자는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심의)

1. 위원회는 심의 대상 연구를 심의 기준에 의거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구 개설을 허가하는 ‘승인(approval)’, 심의결과의 결정을 연기하는 ‘보류(deferral)’, 연구 개설을 불허하는 ‘불승인(disapproval)’을 결정한다.
2. 심의 대상 연구가 의료적, 의학적, 대인적 연구의 측면을 가지고, 임상외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료원 임상심의위원회나 기관심의위원회(IRB)에 해당부분의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3. 본교 의료원 임상심의위원회나 기관심의위원회(IRB)의 심의결과는 이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동일하게 인정되며 해당 연구과제에 효력을 미친다. 이외의 기관은 동일하게 연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심의 대상 연구에 필요한 경우 회의일정에 상관없이 위원회는 신속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5. 심리학과 학위 논문 연구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승인 연구는 학위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졸업논문 제출시 위원회의 승인서를 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6. 논문을 쓰기 전에 자료를 수집했거나 이미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논문을 쓰는 경우 동일하게 연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 동의서와 사후설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7.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되는 연구의 경우, 학과 윤리위원회 및 심리학과에 회부되며 관련된 연구자 모두는 위원회 및 학과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8. 학과 연구윤리위원회의 발족 이후 진행된 연구에 대해서는 후승인을 하지 않는다.

제8조 (협의)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일) 제 7조 5항은 2008년 1월 25일에 신설되어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개정일) 제 7조 6,7,8항은 2008년 11월 24일에 신설되어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심의 위원회 시행세칙(크레딧 사용 연구)

제정일: 2006.09.01.

개정일: 2008.01.25.

개정일: 2008.09.08.

개정일: 2008.11.24.

개정일: 2009.04.28.

제1조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과 연구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규정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신청, 심의의 절차 및 결과 통지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리학 연구개설 신청자격

1. 심리학과 소속 교원, 대학원 재학생
2. 심리학과 소속 교수 연구실의 소속 대학원 재학생(지도교수 승인 필요)
3. 심리학과 소속으로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참여 중인 박사후 과정생(Post Doc), 시간강사, 본교 대학원 재학생(연구처의 공식적 참여 증명 필요)

제3조 심리학 연구자 윤리

1. 연구자는 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계획하는 연구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반드시 연구 수행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구자는 위원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 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성실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승낙을 받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 ① 연구 목적, 소요시간, 절차
 - ② 참가자의 참가 거부 권리와 연구 참가 진행 중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③ 참가 거부나 철회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
 - ④ 잠재적 위험, 불편, 혹은 부정적 영향과 같이 참가 의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들
 - ⑤ 기대되는 연구의 이득
 - ⑥ 비밀 보장
 - ⑦ 참가에 대한 인센티브
 - ⑧ 연구 및 연구 참가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 해소를 위한 담당자 및 연락처
3. 연구자는 참가자의 목소리나 사진 및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기록 전에 참가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승낙을 얻어야 한다. 만약 다음 각 사항과 같이 연구의 특성상 필요시에는 사후에 설명하고 데이터 이용을 승낙 받아야 한다.
 - ① 공공장소에서의 자연적 관찰에 관한 연구
 - ② 속임을 포함하도록 설계된 연구
4. 연구자 혹은 공동연구자는 자신들의 강의 수강생을 연구의 참가자로 받을 수 없다.
 - ① 단, 강의 내용과 관련되는 연구는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강의 내 연구를 허락할 수 있다.

제4조 심리학 연구 참가자 권리 및 의무

1. 참가자는 연구의 일반적인 목적과 수행할 과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외에도 참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다.
2. 참가자는 연구 참가 시작 이후에도 어느 때나 연구 참가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철회를 결정한 참가자는 철회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3. 참가자는 실험참가에 따르는 희생과 위험에 합당한 이득(크레딧 또는 참가비)을 받아야 한다. 교육적 이득을 위해 참가자는 질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분명하고 정직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참가자가 약속된 이득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데이터를 연구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4. 참가자는 특별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동의하지 않는 한 참가한 연구 진행 중 수행되거나 진술한 어떤 내용도 익명과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5. 참가자는 어떠한 연구에도 참가를 거부할 권리를 지니고, 연구에 참가를 강제 받지 않는다. 연구에 대한 참가 경험이 교과과정의 조건인 경우, 연구 참가에 상응하는 대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심리학 연구참가 의무강의 교수자의 준수사항 참조)
6. 연구에서 참가자에 대한 속임이 있었을 경우, 참가자는 어떤 속임이 있었고, 왜 속임을 사용하였는지를 알 권리를 가진다. 만약 사용된 속임이 비합리적이라면, 참가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보류할 권리를 가진다.
7.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참가자가 연구에 대한 어떠한 반대를 가질 경우, 참가자는 심리학과 학과장과 학과 연구 심의 위원회(DRC)를 포함한 적절한 대학 기관에 알릴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8. 연구 참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참가 관리 시스템(<http://psysemi.yonsei.ac.kr>)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자신이 신청한 시간과 장소에 참가시간 5분 전에 도착하여 연구에 참석해야 한다.
9. 연구 참가 신청의 변경 및 취소는 참가 전날까지 가능하고, 참가 당일 00:00 이후의 변경 및 취소는 -1 크레딧의 벌칙이 주어진다.

제5조 신청 및 진행 절차

1. 연구 신청(개강 1개월 전부터 2주일간)
 - ① 연구자는 매학기 1개월 전부터 2주일간 지정 양식의 ‘심리학 연구 신청서’, ‘연구 참가 동의서’, ‘사후설명서’를 참가자 관리조교(이하 ‘관리조교’라 함)에게 제출하여 연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직전 학기와 동일한 연구의 경우 연구신청서의 표지에 '변경 없음'이라고 표기하여 제출한다.
 - ③ 매학기의 연구 신청기간은 정규학과 계절학을 포함한 6개월로 한다. 즉 매학기 연구 신청은 다가오는 계절학기 기간을 포함하므로 해당 계절학기에 연구를 계획하는 경우는 그 전 학기의 연구 신청기간을 이용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설문을 통한 연구를 계획하여 심의를 신청할 경우, 설문문항의 내용이 신청 시 준비되지 못하였을 때는 실제 설문문항을 연구 시행 1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후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 ⑤ 매학기 연구개설 가능 기간은 전반기(개강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후반기(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전 달 5월 말/11월 말), 계절(계절학기 개강부터 기말고사까지)이다. 이외의 기간은

위원회의 별도 공지에 따른다.

2. 심의 (연구신청 종료~개강일)

- ① 관리조교는 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연구자의 신청 자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신청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②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신청된 크레딧에 따른 배분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
 - 내/외부로부터 연구비 수혜를 통해 진행 중인 연구
 - 크레딧이 필요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첨부된 연구
 - 이전 학기 우수 연구자의 연구
 - 신청서에 기재된 연구 목적, 내용, 절차, 설계, 직전 학기까지의 연구자별 크레딧 사용 현황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④ 연구자에게 배분되는 크레딧의 확정은 심리학 교양 및 전공과목의 수강인원이 확정된 이후로 한다.
- ⑤ 해당 학기의 연구심의 과정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시기에 발생한 필요 연구에 대해서 연구자는 ‘신속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정해진 일정과 무관하게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교육(심의 후 1주일 이내)

- ①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자는 관리조교로부터 승인 결과와 함께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구자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통보받는다.
- ② 연구자는 통보받은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관리조교로부터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 받는다.
- ③ 교육 참가는 매학기 의무사항으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연구신청서를 제출한 연구자, 공동연구자 및 실험자
 - 심리학과 대학원 신입생
 - 심리학과 교수의 지도를 받는 신입생
 - 심리학 교양 및 전공과목 조교
- ④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연구자는 배부되는 교육 자료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위원회의 교육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연구자는 연구 승인이 취소된다.

4. 연구 개설 (연구수행 시기로부터 최소 3일전)

- ① 교육 참가를 확인받은 연구자는 관리조교로부터 연구관리 시스템(<http://psysemi.yonsei.ac.kr>) 이용 권한을 부여받는다.
- ②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연구자는 승인받은 연구 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연구관리 시스템에 연구를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5. 연구 수행

- ① 연구자는 모집 내용에 명기한 시간과 장소에 대기하여 참가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한 참가자에게 연구에 대한 사전 공지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설명을 들은 참가자는 연구 참가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연구자에게 제출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를 철회할 수 있고 약속된 크레딧은 부여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연구 진행을 마친 후, 참가자에게 연구 진행 중에 발생한 불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크레딧(credit)이 부여될 것을 알려야 한다.
6. 연구 보고 (연구 종료 후 즉시 시행)
- ① 참가자 모집 단위의 단일 연구가 끝난 후 2일 이내에 연구자는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 참가자에게 크레딧을 부여한다.

제6조 연구 신청 및 수행 시 유의사항

1. 재심의 신청

- ① 심의 단계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연구자는 승인 거부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 ② 재심의를 탈락한 연구자는 해당 학기에 한하여 연구 신청 자격을 보류한다.

2. 참가자 모집 시 유의사항

- ① 연구 관리 시스템에 개설되는 연구의 내용과 참가자 모집 내용은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② 연구의 내용과 참가자 모집 내용이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연구자에게는 연구 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가 부여될 수 있다.

3. 연구 계획의 변경 시 필요한 절차

- ①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연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연구와 참가자 모집을 실시해야 할 경우, 연구자는 지정 양식의 ‘심리학 연구 변경 신청서’를 관리조교를 통해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심리학 연구 변경 신청서’의 제출은 연구 수행 시기로부터 최소 1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4. 크레딧(credit) 부여 기준

- ① 해당 연구에 출석한 참가자에게는 연구 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크레딧을 부여한다. 30분 이내의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를 단위로 하여 1 크레딧씩을 부여한다.
- ②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연구자가 결석하거나 지각하여 연구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해당 참가자가 연구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약속된 크레딧을 부여한다.
- ③ 약속된 연구에 결석한 참가자에게는 벌칙으로 -1 크레딧을 부여한다.
- ④ 연구에 지각한 참가자에게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 참가를 거부할 수 있고, 0 또는 -1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으로 인하여 연구 참가를 연구 수행 현장에서 철회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약속된 크레딧을 부여한다.

5. 연구자를 위한 크레딧(credit) 추가 배정

- ① 연구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다른 연구자에게 배정 가능한 추가 연구 크레딧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승인 하에 관리조교가 이 사실을 다른 연구자에게 공지하여 추가 신청을 받아 재분배할 수 있다.

- ② 추가 연구 크레딧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는 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리학 연구 변경 신청서를 관리조교를 통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추가 연구 크레딧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크레딧 배정은 위원회 6. 연구수행 가능시기의 연장
- ① 모집 계획만큼의 참가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배정받은 연구 크레딧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 하에 연구수행 및 참가자 모집이 가능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연구자는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참가자 부족을 증빙할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배분 받은 크레딧은 한 학기당 1회에 한하여 보유 크레딧의 100%까지 연기가 가능하나 2회째에는 보유 크레딧의 50%까지만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연구 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징계

1.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심리학과 연구관리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거나 신청 연구의 승인을 거부 혹은 취소할 수 있으며 크레딧 배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필요시 학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 ① 신청 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 ② 신청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 ③ 신청 자격 미비자가 대리 신청을 하였을 경우
- ④ 신청 자격 미비자의 신청을 대리하여 하였을 경우
- ⑤ 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청한 크레딧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 ⑥ 심리학과 연구 참가 의무강의를 위원회의 공식적 절차 없이 연구자나 의무강의 교수자 임의로 개별적인 실험 및 설문 등의 연구에 이용하는 경우
- ⑦ 연구자가 본인에게 배정된 크레딧을 위원회의 승인 없이 무단 양도하거나 받을 경우
- ⑧ 연구자가 학술적 목적 이외에 개인의 영리나 외부인의 영리를 위해 심리학 연구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⑨ 타인 명의로 연구 신청하여 연구 신청자와 실제 연구자가 다른 경우
- ⑩ 연구 참가 의무강의 교수자가 본인의 수강생은 본인의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참여를 방치, 요구, 혹은 권유하는 경우

2.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제를 적용하여 징계한다.

① 1등급

- 기준 : 받은 크레딧 만큼 개설하지 않고 공지된 반납신청일보다 크레딧을 늦게 반납하거나, 미크레딧 연구결과보고를 학기가 끝날 때까지(계절학기 신청은 계절학기 끝날때까지) 하지 않은 자, 연구신청일보다 먼저 연구를 시작한 자, 연구 승인 없이 연구를 시작한 자, 다른 사람에게 크레딧을 양도한 자, 2, 3등급을 2번 이상 받거나 4등급을 3회 이상 받은 자, 적절한 사유 없이 DRC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자

- 벌칙 : 다음 학기 크레딧 배분 없음(학기 중 크레딧 추가 배분 포함)

② 2등급

- 기준 : 연구 참여 마감 1주일을 남기고 연구를 개설하여 받은 크레딧의 50% 이상 사용하

지 못한 자

- 벌칙 : 이전 학기에 신청한 크레딧의 80%만 배분

③ 3등급

- 기준 : 받은 크레딧 만큼 개설하였으나 미신청으로 인해 크레딧의 50% 이상 남은 자

- 벌칙 : 경고

④ 공동책임 연구실

- 기준 : 1, 2등급 2명 이상인 연구실

- 벌칙 : 연구실 전원에게 이전 학기에 신청한 크레딧의 80%만 배분(개인 패널티와 중복)

제8조 심리학 연구참가 의무강의 교수자의 준수사항

1. 매학기 시작 전, 학과는 심리학 연구참가 의무강의 교수자에게 학과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여 교수자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공문에는 심리학 연구 참가와 관련하여 수강생에게 공지해야 할 사항, 수업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강의조교의 연구자 교육 프로그램 참가 의무,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교수자는 공문의 내용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2. 교수자는 해당 강의의 수업 계획서에 수강생의 연구 참가 의무와 크레딧 지급 절차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여 수강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첨부내용은 공문에 제시된 내용과 서식을 이용한다.
3. 교수자는 심리학 연구 참가를 원하지 않거나 연구 참가가 곤란한 수강생에 대해서는 리포트 제출 등을 통한 크레딧 획득의 대체 수단을 확보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4. 교수자는 학기 중에 수강생의 연구 참가 의무와 크레딧 지급에 관한 사실을 강의 시간과 사이버 강의실(YSCEC) 게시판 등을 이용해 알려주고 수강생의 크레딧 이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5. 학기말이 되면 교수자는 해당 수업의 조교와 함께 수강생의 크레딧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5% 비율로 성적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 심리학 연구참가 의무강의 조교와 학과 조교장의 준수사항

1. 심리학 연구참가 의무강의 조교로 선정된 즉시, 해당 조교는 심리학 연구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학과 조교장은 선발된 강의조교에게 안내 프로그램의 참가의무를 공지하여 안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고 참가자 관리조교와 함께 안내 프로그램 교육 실시를 담당한다.
2. 해당 조교는 학기 초에 확정된 출석부가 나오면 출석부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의 수강생에게 연구관리 시스템에 등록할 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연구 참가와 크레딧 부여 절차에 관한 수강생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해당 조교는 학기 중에 수강생의 크레딧 이수 내역을 확인하고 학기말에 수강생의 크레딧 이수 내역을 종합하여 성적 처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해당 강의 교수자에게 제공한다.

제10조 참가자 관리조교의 준수사항

1. 관리조교는 심리학 연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식을 구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관리조교는 연구 참가자 모집을 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자에게 교육 실시 기간과 장소를 사전 통지하고 위원회에 의한 교육을 지원한다.
3. 관리조교는 연구 참가자 모집을 승인 받은 연구자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연구참가 의무강의

조교에 한하여 연구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4. 관리조교는 연구 참가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참가자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5. 학기가 끝나면 관리조교는 연구관리 시스템의 기록을 토대로 전체 크레딧의 부여 및 사용 내역을 결산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4.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표절

1.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2.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① 논문의 내용이 1/2 이상 동일한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즉, 동일 저자라도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②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제13조 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저자가 된다.

제14조 연구자료의 이중 출판

1.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전임교원의 승진 및 승봉 심사 시 연구실적에 포함된 논문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학과승진심사위원회가 검토한다.
2. 학위논문에 포함된 연구가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논문심사위원들이 검토한다.
3. 논문심사위원들은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학과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4.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체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논문심사위원들에게 고지한다.

제17조 연구윤리 검증 원칙

1. 학위논문에 포함된 연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과윤리위원회에 있다.
2. 학과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학과는 학과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윤리 검증 절차

1. 학위 심사에 이미 합격하였거나, 심사 중에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에 대한 심의는 학과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학과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3. 학과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학과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4. 학과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5.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6. 학과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학과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19조 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학과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논문 심사위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논문이 학회지에 심사 중 또는 기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학과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① 학과징계위원회에 통보
 - ② 학교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에 통보
 - ③ 외부기관의 연구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을 경우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 통보

부 칙

- (1)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다.
- (2) 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시행세칙의 개정안은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4) 제 6조 3항, 제 7조 2항의 개정안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시행세칙의 개정안은 200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3.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심의 위원회 연구신청서 (일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 연구 신청서

연구번호

《심의를 거친 후 입력됩니다.》

연구제목

연구자			
성명	직위: 교수() 강사() 대학원생() Post Doc.() 기타()		
연락처	e-mail		
소속연구실	학기	논문학기여부 ()	내선번호
지도교수			
성명			
연락처	e-mail		
공동연구자/실험자			
성명			
연락처	e-mail		
소속연구실	학기	내선번호	

첨부해야할 서식 목록

1. 연구 참가 동의서
2. 심리학 연구 개설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지도교수의 승인이나 연구참여 확인서)
3. 사후설명서 (실험 참가자에게 전달하려는 내용 그대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주의사항

1. 용어를 영어로 기입하는 것을 피해 주십시오.
2. 각 문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3. 지도교수님 확인을 반드시 받아 주십시오.
4. 연구 시작 전 반드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십시오.

부록 4.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심의 위원회 참가자 동의서 양식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 연구 참가 동의서

연구번호:

《심의를 거친 후 입력 됩니다.

연구제목	연락처	e-mail
연구자 성명	연락처	e-mail
실험자 성명	소속 연구실	내선번호
지도교수 성명	크레딧 수	
실험 및 설문 장소 :		
참가자 제한 사항 :		

연구 설명

연구목적

연구절차와 방법 설명

연구의 함의와 이득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설명:	확인(서명)
중도참여 포기 가능 여부와 설명:	확인(서명)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	확인(서명)
참가자 권리 설명(시행세칙 참고)	확인(서명)

위 심리학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에 동의하고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참가자

(서명) 실험자

(서명)